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연번	구 분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1	박성연의원안	박성연의원 외 10명	2023년 8월 8일	2023년 8월 21일
2	이민석의원안	이민석의원(찬성 39명)	2023년 8월 11일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박성연의원안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조정하고, 심리안정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8조단서).

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19항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안 별표 3).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24. ~ 8. 28.) 결과: 의견없음.

## 나) 이민석의원안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확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나.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함(안 제24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8. 24. ~ 8. 28.) 결과: 의견없음.

### 3.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들은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 확대, 심리안정휴가 신설,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출산 및 난임치료 관련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현 행	박성연 의원 개정안	이민석 의원 개정안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 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 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근무 를 한 공무원은 「지 방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의 지급 범위에서 시 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u>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는 다음과 같다. 다 만, 법 제27조제2항제2 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 무원 및 특수경력직공 무원의 재직기간이 <u>2 년 미만인</u> 경우에는 별 표 4에 따라 <u>2년 미만</u>	제18조(연가일수) ----- ----- ----- ----- ----- ----- ----- ----- <u>5 년 미만인</u> ----- ----- <u>5년 미만</u>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수에 각각 2일을 더한  
다.

~ (생략)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  
비 지급대상인 연가일  
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  
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  
로 이월·저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인공수정 또는 체  
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  
가를 받을 수 있다. 다  
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  
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 -----  
----- 3일-----

--.

~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  
----- 연가일  
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공수정 또는 체  
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  
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  
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  
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  
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

⑧ ~ ⑱ (생략)  
<신설>

⑲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  
식을 위한 심리안정휴  
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  
법」 제5조제1호 및

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  
일(시술 당일에 1  
일과 시술일 전  
날, 시술일 후 2  
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  
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  
여 체외수정 시  
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  
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  
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  
술일 후 2일 이  
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  
나 시술 관련 진  
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b>배우자</b>	<b>10</b>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b>배우자</b>	<b>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b>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박성연 의원 안에 대해서는 ‘심리안정휴가’ 관련, 조례에서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조항 신설보다는 기존 내용의 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이민석 의원 안의 초과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행은 연가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특별휴가	경 조 사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 산	임신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유 산 · 사 산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및 배우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배우자 3일
여 성 보 건	생리 기간중 휴식을 부여	매월 1일 (무급)
임 신 검 진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중 1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임신 기간중 일 최대 2시간
육 아 시 간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난 임 치 료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체외수정 4일, 인공수정 2일
수 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재 해 구 호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성 과 우 수 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0일 이내
사 가 독 서 학 습	아이디어 발굴 및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	2일(성과우수자 휴가일수에 포함)
장 기 재 직	5년~9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재직자	5~25일
자 녀 입 영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가 족 돌 봄	미성년 자녀 및 그 외 가족 (성년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10일 이내(미성년·장애인 자녀 돌봄, 한부모공무원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심 리 안 정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	3일 이내 소방공무원
선 거 종 사 자	선거에 인력 지원한 공무원	1일

## 나. 세부내용 검토

### 1) 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박성연의원 안 제18조단서)

- 안 제18조 단서 개정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박성연의원 안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u> 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u>2년 미만의</u>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u>2일</u> 을 더한다.		제18조(연가일수) ----- ----- -- . ----- ----- ----- ----- <u>5년 미만</u> <u>인</u> ----- <u>5년</u> <u>미만의</u> ----- --- <u>3일</u>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력 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 다만, 대상자가 약 1,800여명 증가(채직 2년~5년미만)함에 따라 연가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별 현황 〉

(단위 : 명, '23.7.31. 기준)

구분	현원(정원) 계	2년미만	2년~5년미만	5년이상
계	11,124 (10,680)	776	1,833	8,515
경력직	11,096 (10,636)	772	1,823	8,501
특수경력직	28 (44)	4	10	14

**2) 심리안정휴가 신설**(박성연의원 안 제24조제19항)

- 안 제24조제19항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박성연의원안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생략)</p> <p><u>&lt;신설&gt;</u></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과 같음)</p> <p><u>⑲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u></p> <p>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p> <p>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 중 인명피해와 관련된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정기간의 휴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다만, 특별휴가 부과를 위한 정신적 외상의 위험범위 정도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 의료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과 특별휴가 남용 소지 여부 및 집행에 있어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본 신설 규정은 조례 제24조제17항에 관련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설이 아닌 제24조제17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심리안정휴가’ 관련, 조례에서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조항 신설보다는 기존 내용의 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수정의견 〉	
		※ 행정국 의견 반영	
현	행	박성연의원 개정안	수 정 의 건
제24조(특별휴가) ① ~ ⑯ (생략)	⑰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⑱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⑱ (생략)

<신설>

⑲ 소속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현행과 같음)

<삭제>

	<u>를 수행하는 과정에</u> <u>서 인명피해가 있는</u> <u>사건·사고를 경험</u> <u>했을 것</u> 2. <u>제1호에 따른 인명</u> <u>피해가 있는 사건·</u> <u>사고의 경험으로 인</u> <u>해 심리적 안정과 정</u> <u>신적 회복이 필요하</u> <u>다고 인정될 것</u>
--	---

### 3) 출산휴가 확대(박성연의원 안 별표3)

- 안 별표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박성연의원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b>배우자</b>	<b>10</b>	출산	<b>배우자</b>	<b>10</b> <b>(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b>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의 경우 한 자녀 출산에 비해 배우자 산후조리 및 육아를 위한 휴가 필요성의 정도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4)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이민석의원 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4제1항)

- 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4제1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이민석의원 안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p>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 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u>연 가일수 중</u>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 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 용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u>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 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 환할 수 있다.</u></p> <p>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 ----- 연 가일수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u>전환된 연가일수 중</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수당과 연가 중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연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가를 갈 수 있는 업무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이민석의원 안 제24조제7항)**

- 안 제24조제7항은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를 1일에서 최대 4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이민석의원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u>	⑦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u>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u>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u> 나. <u>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u>	⑦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u>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u>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u> 나. <u>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u>

<p>⑧ ~ ⑱ (생략)</p>	<p><u>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일)</u>  <u>다. 남자 채취를 하여 제외수 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 일(남자 채취일에 1일, 시 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남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남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 일)</u>  <u>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 일</u>        ⑧ ~ ⑱ (현행과 같음)</p>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난임치료시술 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p><b>「지방공무원 복무규정」</b></p> <p><b>제7조의7(특별휴가) ⑥</b>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p> <p>가. <u>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u></p> <p>나. <u>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u></p>
---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다만, 동 내용은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나, 적기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행정국에서는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6) 부 칙(박성연의원 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b>2023년 7월 18일</b>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b>2023년 7월 18일</b>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박성연 의원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부칙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와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다만, 이민석 의원안의 부칙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만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일수 전환과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가 없는 바, 관련 조항의 적용례를 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임.
  - ※ 행정국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일수 전환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이 가능하고,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미 휴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 적용례를 두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한편, 박성연 의원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일자(2023년 7월 18일)가 이미 경과된 상황으로 특정일자 명시에 실익은 없다고 하겠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적합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 및 조례의 적기 제·개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복무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의원발의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